

육아정책 소식

문화체육관광부,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11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2017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전국 문화기반시설과 연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아기에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동안 문체부와 교육진흥원은 9개 문화기반시설을 기반으로 유아에 맞는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왔다.

- 가상현실(VR)로 미술관을 감상하는 '영은미술관 공간 속으로 풍덩'(영은미술관, 경기)
- 자연을 관찰하고 채집해 새로운 조형작품을 만드는 '미술과 자연으로 자라는 슬기로운 귀요미'(임림미술관, 충남)
- 생활 속 소재를 주제로 삼은 '생각이 자라는 미술관'(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경남) 등

특히 올해는 '파견형'과 '방문형'으로 프로그램을 나눠서 운영한다. '파견형'은 문화소외지역으로 전문교육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며, '방문형'은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공간을 활용한 예술활동으로 추진되는 방식이다.

문체부는 이 사업을 통해 "앞으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해 문화예술교육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재외국민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9월 1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국내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는 재외국민 아동에게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외국민은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해외이주법'에 근거해 귀국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5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육료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와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보장심설변경협의회의 권고, 결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을 받게 되었다.

앞으로는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0-5세 유아

는 지역내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누리과정 지원 뿐만 아니라 0~2세 보육료도 함께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단, 지원은 국내 어린이집(90일)과 유치원(30일)을 일정기간 장기적으로 다닐 경우에만 가능하며, 해외체류 시 자격은 중지된다.

전국 15개 법원에서 입양 부모교육 실시

보건복지부는 2017년 9월 2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10월부터 전국 15개 법원에서 법원행정처 지원하에 입양 부모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양특례법에서는 입양 허가 전 의무적으로 8시간 부모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민법에 따라서는 1시간 교육을 법원 재량으로 실시해왔다. 앞으로는 민법에 따라 입양 허가를 신청한 후 법원에서 3~4시간 부모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교육과정(1강 교육: 입양의 법률적 이해)에서 2강(자녀 발달과 적응)과 3강(아이와 부모의 행복한 소통)을 추가하였다. 또한 입양 부모교육의 전국적인 확대를 위해 교육·상담 관련 분야 강사 41명을 모집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 판사, 가사조사관, 전문가 등 검토를 거쳐 교육내용도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입양 신청 부모가 입양의 법률적 효과, 입양 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건강한 입양가정을 이룸으로써 입양아동의 인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